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71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김해진례 C-1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211호(2021.01.07.)로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김해진례 C-1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C-1BL

(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)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[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
신혼희망타운 → 공공분양, 공공임대]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